

가정법률상담

통권501호

2025

05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ISSN 1227-7756)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난 4월 4일 본소 강당에서 202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업무협력기관 워크숍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본소와 전국업무협력기관은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각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관련 기사 32번)



본소 박배희 소장은 4월 3일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관련 기사 33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반 : 반복되는
부 : 부정부패!
패 : 패가망신의 지름길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도입 - 성과와 한계
- 22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⑨
- 24 · 가정폭력상담실
- 27 · 어떻게 할까요
- 29 · 좋은 책
이중 하나는 거짓말
- 30 · 현장체험 연수 소감문
- 32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6 · 소송구조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가정

여전히 남은 가족법의 과제를 생각하는 가정의 달

호주제 폐지 20주년의 해에 맞이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호주제가 없어지면 가정이 해체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격렬하게 호주제 존치를 주장하던 분들이 계셨지만 놀라우리만큼 평온하게 호주제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요즘 상담소에 실무수습이나 현장실습을 오는 대학생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조차 ‘호주제’를 낯설어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 그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연구하고 서명운동에 나서고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새삼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어떠한 법과 제도, 관습이나 논리도 역사적 맥락, 사회의 변화, 시대적 가치와 별개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0년 전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고 다음 달인 3월 2일 국회에서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호주제를 중심으로 놓고 가족을 편제하는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뀌었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그 어떤 혼란이나 이로 인한 가족의 문제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간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을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되었고 가족구성원 사이의 성별에 따른 차별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오히려 근래의 사회와 가정을 들여다보면 호주제가 지금까지 존속되었다면 가족 내에서 엄청난 갈등과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겠다 싶어 20년 전이라도 호주제를 폐지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현실은 상담소의 다양한 상담창구는 물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에도 민감하게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가족의 개념’이나 서사가 달라졌다는 평론을 자주 접하게 되고 실제 드라마에도 그러한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심각한 자녀 교육이나 이혼을 둘러싼 갈등까지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으니 사회상의 변화와 가족 의식의 변동이 규모와 속도의 모든 측면에서 점점 가속도가 붙어 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혈연’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가족 드라마의 큰 흐름이 되었고, 최근 공영 라디오 방송의 공익광고도 혈연이나 ‘이웃사촌’을 넘어서는 폭넓은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가족’인가를 묻고 그 답은 당대의 사회와 가치관과 그리고 그 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담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가부장제가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지탱하는 주요한 가치관이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 사회와 그 사회를 이루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평등한 가정과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호주제폐지는 가부장제라는, 이미 시대는 지났지만 거대한 봉우리 하나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큰 봉우리를 넘었다고 해서 모든 과제가 다 해결될 것은 아니었고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더불어 법과 제도를 다듬고 정비하는 과제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앞장서 가정문제를 들여다본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인 상담소에서는 상담소 본연의 법률구조 업무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완전한 법적 성평등을 위한 가족법개정을 사업의 중심에 놓아두고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거나 한발 앞서 가족구성원의 복리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한 의식개혁과 교육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호주제폐지 20주년의 해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상담소에서 주목해 온 호주제폐지 이후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족과 혼인의 변화를 직시하면서 그 내용을 포용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다시 한번 열어 보고자 합니다.

호주제폐지 이후에도 여전한 자녀의 성과 본을 둘러싼 과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담아내지 못하는 가족법의 문제 등은 상담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가족법개정의 주요한 의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포괄한 모든 사회적 시스템은 그 사회의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우리 가족법이 모든 가족구성원을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기를 가정의 달에 다시 간구해 봅니다.



특집

2025년 제1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도입 - 성과와 한계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독일에서 공부하던 시절,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진료에 동의를 거부한 사례에서 담당 의사의 연락으로 법원이 즉시 개입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더구나 그 판결문에서 다루어진 사건이 발생한 때는 1966년이었으므로, 그 당시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이미 그 정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놀랍고, 다른 한편 부럽기도 했다. 귀국하여 대학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던 1990년대 후반 무렵부터 우리사회에서도 조금씩 아동학대에 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으나, 사회적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친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배권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부모는 별 다른 제한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의 양육방식을 정할 수 있었다.¹⁾ 그리고 그와 같이 부모에 의해서 정해진 양육방식은 사회에서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졌기에 국가를 비롯하여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금기시되는 분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당시에도 민법 제924조에 친권상실제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가 점증하고 있는 당시의 사회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민법의 친권상실제도만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우리사회에도 독일과 같은 아동학대방지 체계를 갖추 수 없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은 그 무렵부터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다른 분들과 본격적으로 공유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의 세월이 흐른 2011년 한 연구모임에서였다. 그 모임에서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토론하던 중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가정법

* 지난 2월 6일 직원재교육을 겸해 열린 본소의 2025년도 제1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상용)에서 발표된 원고이다.

1) 당시 민법 제909조 제1항은 “未成年者인 子는 父母의 親權에 복종한다”라고 규정하여 여전히 친권을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배권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자녀를 부모의 권리객체로 보는 낡은 관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즉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부모의 의사였으며, 자녀의 복리는 부수적인 기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 후에 이어진 회의에서 논의를 통하여 그와 같은 기본적인 구상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외국의 법제도를 참고하면서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다.

II. 부모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녀의 치료를 거부한 사례

- 독일과 우리의 경우를 비교하여

여기서는 부모가 종교상의 이유로 자녀에게 필요한 치료 행위를 거부하여 자녀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경우에 두 나라의 법제도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실제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다.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의료시술에 대한 부모의 동의 거부가 친권 남용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²⁾ 그리고 우리 민법(제924조 이하)과 독일민법(제1666조 이하)은 이전부터 부모의 친권남용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친권상실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다. 과거에 두 나라에서 각각 벌어졌던 유사한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또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였는지 살펴본다.

1. 독일의 사례³⁾

(1) 1966년 3월 20일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부모 사이에서 네 번째 자녀가 태어났는데, 태아적아구증(Erythroblastose)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의사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교환수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종교적인 이유로 그러한 조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의사의 권고에 따라 오전 11시쯤 아이를 소아전문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에서 아이 아버지는 수혈을 제외한 모든 의료적 조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동의하였다(종교상의 신념으로 수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 그날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수혈 이외에 다른 조치는 더 이상 고려할 수 없게 되었다. 주치의와 병동의 주임 의사 및 병원장은 헌혈자를 병원에 불러 대기하도록 하였으며, 오후 5시 병원장이 아이 아버지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수혈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병원장은 신속히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 아이가 단기간 내에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자신이 아는 바로는 수혈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의사들은 이미 증상이 진전되어 수혈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아이 아버지는 역시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동의를 거부하였다. 이에 병원장은 그 지역 관할의 후견법원⁴⁾ 판사에게 연락하

2)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24, 468면 이하; 독일에서도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동의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부모가 수혈에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친권의 남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Bender, Zuegen Jehovas und Bluttransfusionen, MedR 1999, 265. 다만 부모가 수혈 이외에 다른 대안적 치료법(무수혈 수술)을 제안하면서 수혈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모가 제안한 대안적 치료법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성급히 친권의 남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 의견에 따르면 독일 내에서 무수혈 치료법에 찬성하는 의사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Hessler/Glockentin, Kein genereller Mißbrauch des Sorgerechts bei verweigerter Einwilligung in eine Bluttransfusion - Stellungnahme zu Bender, MedR 1999, 260 ff. -, MedR 2000, 419ff.

3) OLG Hamm, FamRZ 1968, 221f.

4)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친자법(Gesetz zur Reform des Kindschaftsrechts vom 16. 12. 1997. 1998. 7. 1. 시행)에 의하여 자녀의 보호를 위한 개입과 법적 조치는 가정법원(Familiengericht)의 관할이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BT-Drucks. 13/4899, S. 71f. 참조; 현재 독일에는 600개가 넘는 가정법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독일가정법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상용,

였고,⁵⁾ 연락을 받은 판사는 오후 6시 30분경 병원에 나타났다. 판사 역시 아이 아버지가 수혈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으나, 아이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후견법원 판사는 임시조치⁶⁾로서 그 자리에서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당시 집에 있었음)의 양육권(친권 중 자녀의 신상보호에 관한 부분)을 상실시키고 상실된 부분에 대한 후견인으로 병원장을 선임하였다.⁷⁾ 후견인으로 선임된 병원장은 즉시 수혈을 하도록 지시하여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 후 건강을 되찾은 아이는 양육권을 회복한 부모에게 인도되었다.⁸⁾

(2) 1994년에도 위의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⁹⁾ 1994년 2월 7일 X병원 병동의 주임의사는 후견법원에 전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렸다: 1994년 2월 7일 27주 만에 출생한 아이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의학적 견지에서 볼 때 수혈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후견법원은 1994년 2월 8일 독일민법 제1666조에 따라 부모의 친권을 일부 상실시키고, 그 범위에서 아동청

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조기 출산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영아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적 처치 특히 수혈에 대한 동의”로 한정되었다. 그 이유에서 후견법원은 - 자녀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판단에 따르면 - 자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즉시 수혈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실시하였다.

자녀의 아버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당일(1994. 2. 8.)에 항고하였다: 후견법원은 사전에 부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고 성급히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다. 자녀의 치료를 위하여 수혈 이외에도 대안적 방법이 있으며, 대안적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 수혈로 인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고는 1994년 2월 9일 기각되었으며, 자녀의 부모는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다. 이에 대해서 쉐레 고등법원은 1994년 2월 21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요약): 독일민법 제1666조 제1항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위험을 막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수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부모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이러한 경우 부모는 기본법 제

“독일가정법원의 기능과 역할”, 가족법연구 III, 법문사, 2010, 267면 이하 참조.

- 5) 당시 후견법원은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며,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것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가정법원에 알릴 수 있었기에 의사가 직접 후견법원에 전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Palandt/Lauterbach, 1970, § 1666 7).
- 6) 후견법원이 즉시 개입해야만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시 독일민법 제1666조에 근거하여 임시명령을 할 수 있었다. OLG Hamburg, NJW 1956, 1156; Dölle, Familienrecht Band II, 1965, S. 267; Palandt/Lauterbach, 1970, § 1666 7).
- 7) 당시 독일민법 제1666조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아동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다양한 개별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법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조치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Palandt/Lauterbach, 1970, § 1666 5).
- 8) 당시 후견법원은 구 독일민법 제1696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전에 내린 명령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었다(Dölle, Familienrecht Band II, 1965, S. 272; Palandt/Lauterbach, 1970, § 1696 1). 현행 독일민법 제1696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이 자녀의 보호를 위하여 취한 법적 조치는 자녀의 복리에 대한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의 양육권을 상실시킨 경우에도 그 위험이 사라지면 다시 부모의 양육권을 회복시켜서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의 양육이 일반적으로 부모에 의한 직접적인 자녀양육을 대체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는 것이다(Stumpf, Opferschutz bei Kindesmißhandlung, 1995, S. 77).
- 9) OLG Celle, NJW 1995, 792ff.

6조 제1항(부모의 양육권)¹⁰⁾이나 제4조 제1항(종교와 양심의 자유)을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리들은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에 대한 자녀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 후순위로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후견법원은 담당 의사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확신한 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였는데, 이는 허용될 수 있다.¹¹⁾ 2심 법원인 지방법원 역시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부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였는데, 이러한 절차진행 방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비례의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친권에 대한 후견법원의 개입은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허용될 수 있다. 후견법원 판사의 기록과 1994년 2월 8일 병원의 통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자녀의 수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를 상실시켜야 할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심 법원은, 자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독일민법 제1666조 제2항에 따른 조치(법원은 부모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로써 충분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다. 이 규정은 1979. 7. 18. 친권법 개정¹²⁾시에 도입된 것으로서, 후견법원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부모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정은 바로 부모가 자녀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적 처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BT-Drucks. 8/2788, S. 59). 이 규정에 근거하여 후견법원은 부모를 대

신하여 자녀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의 친권을 일부 상실시키고 후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동意的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친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이러한 이유에서 켈레 고등법원은 수혈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우리의 사례

(1) 위에서 소개한 독일의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1980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다.¹³⁾ 이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가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딸에 대한 수혈을 거부한 결과, 그 딸이 사망하게 되자 어머니를 형사처벌한 경우(유기치사죄)에 관한 것이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의사가 권하는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 환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위험이 예견 가능한 경우에 아무리 생모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하고자 하는 위의 수혈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그 환자로 하여금 의학상 필요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딸의 사망이 친권남용의 결과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사례와 구별되는 점은 아동이 사망하기 전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만 아동의 사망 후에 친권자인 모를 처벌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10) 원문(NJW 1995, 793)에는 “Art. 6 I GG (elterliches Erziehungsrecht)”로 되어 있는데, 제6조 제2항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11) 다만 켈레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구 독일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a 제1항 3문에 따라 독일민법 제1666조, 제1666조a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에서 후견법원은 항상 해당 자녀의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절차를 지체하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 후 지체 없이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구 독일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a 제3항 제2문). 후견법원은 임시명령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후견법원은 부모가 항고이유에서 밝힌 수혈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자녀를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부모의 항고이유서를 제공하고, 부모가 제시한 대안적 치료방법(그리고 X교수의 조언을 들으라는 부탁)에 대한 담당의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12) Gesetz zur Neuregelung des Rechts der elterlichen Sorge vom 18. 7. 1979. 1980. 1. 1. 시행

13) 대법원 1980. 9. 24. 79도1387.

(2) 이와 유사한 사건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1999년 8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빛나간 믿음 - 자식의 생명, 부모의 것인가)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피해자 김신애 양(1990년 - 2002년 5월)은 1995년 상대적으로 완치율이 높은(약 90%) 소아암 진단을 받았는데, 개신교 신자인 부모는 기도로써 치료할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치료를 거부하였다. 김양은 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이후에야 비로소 사회단체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4년간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여 치료의 적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부모가 후속 치료를 거부하고 다시 아이를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사실상 방임했기 때문에 결국 사망하였다.

(3) 2009년에도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딸의 수혈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 2009년 9월 6일 태어난 아이는 대동맥판막의 선천 협착, 양방단실 유입증, 심방심실 중격 결손 증 등의 진단을 받고, 출생 직후부터 서울아산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9월 24일 아이에게 우선적으로 폐동맥 밴딩술을 시행하였으나, 아이의 심장 질환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심장교정 수술인 폰탄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의사는 아이의 부모에게 수혈 방식의 폰탄 수술은 회복 가능성이 30~50%이지만, 무수혈 방식의 수술은 회복 가능성이 5%로 떨어진다고 설명하며, 부모에게 수혈 방식의 수술을 권하였다(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아이의 기대 생존기간은 길게 잡아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예상된다는 점도 설명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종교적 이유로 수술에 수반되는 수혈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병원 측은 10월 19일 아이의 부모를 상대

로 법원에 ‘진료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10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수혈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의 행위(부작위)를 친권의 남용으로 인정하고, 병원 측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수혈을 시행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친권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진료행위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¹⁴⁾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가처분결정 직후 무수혈 심장 수술을 성공한 경험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아이를 옮겼으며, 아이는 무수혈 수술을 받기 전인 10월 29일에 사망하였다.

3. 비교 검토

과거 독일에서 있었던 두 사례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세 사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1) 독일의 경우

1) 독일에서는 1960년대(그리고 그 이전에도)에도 아동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후견법원에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법원의 개입을 촉구할 수 있었다. 당시 독일가사비송법에는 누구나 후견법원에 절차의 개시를 촉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이는 당연한 법리이므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었다.¹⁵⁾ 그러한 개입 촉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으며,¹⁶⁾ 이러한 구조는 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의 신속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자 2010카합2341 결정(주문: 채무자들은 채권자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신청외인에 대하여 구명(救命)을 위하여 행하는 수혈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결정에 대한 평석으로는 이봉민, 자녀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한 친권남용 통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자 2010카합2341 결정 -, 법조 제668호(2012. 5.), 233면 이하 참조.

15) 독일가사비송법(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을 대체한 현행 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2009. 9. 1. 시행)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MüKoFamFG/Ulrici, 3. Aufl. 2018, FamFG § 24 Rn. 1.

16) 법원이 반드시 절차를 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청구’와 구별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MüKoFamFG/Ulrici, 3. Aufl. 2018, FamFG § 24 Rn. 1.

아동을 보호하려면 무엇보다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아동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아동학대를 인지한 사람 누구나(특히 의사나 교사 등 자녀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¹⁷⁾) 법원에 통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는 아동학대방지에 있어서 최선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독일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도 법원이 임시명령으로 부모의 친권 중 일부를 상실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선임된 후견인은 친권자를 대신하여 자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다. 당시 독일민법 제1666조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아동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다양한 개별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법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조치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¹⁸⁾ 예를 들면 법원은 친권 전부의 상실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친권의 일부 상실(예를 들어 양육권만의 상실 또는 양육권 중에서도 거주지정권만의 상실 등)도 명할 수 있었다.¹⁹⁾ 친권의 일부만이 상실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다면(예를 들어 1966년 사례에서와 같이 부모가 모두 양육

권을 상실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견이 개시되었다(구 독일민법 제1909조 제1항. 현행 독일민법 제1809조).²⁰⁾ 이 때 후견법원은 친권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었다.

1979년 친권법 개정²¹⁾에 의하여 후견법원은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부모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다(독일민법 제1666조 제2항). 이 규정은 부모가 자녀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적 처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²²⁾ 독일의 1994년 사례에서 법원은 1966년 사례와 달리 부모의 친권 중 일부를 상실시키고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1979년에 신설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필요 이상으로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²³⁾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독일민법 규정은 2008년에 큰 폭으로 개정되었으며,²⁴⁾ 이에 따라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독일민법 제1666조 제3항. 가정법원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아동학대의 방지를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 대한 지원(예를 들어 부모에 대하여 양육지원 서비스²⁵⁾

17) Keidel/Kuntze/Winkler/Schmidt, FGG § 12 Rn. 8; MüKoFamFG/Ulrici, 3. Aufl. 2018, FamFG § 24 Rn. 1.

18) Dölle, Familienrecht Band II, 1965, S. 264; Palandt/Lauterbach, 1970, § 1666 5).

19) Dölle, Familienrecht Band II, 1965, S. 266; Palandt/Lauterbach, 1970, § 1666 5).

20) Palandt/Lauterbach, 1970, § 1909 2).

21) Gesetz zur Neuregelung des Rechts der elterlichen Sorge vom 18. 7. 1979. 1980. 1. 1. 시행.

22) BT-Drucks. 8/2788, S. 59.

23) Bender, Zuegen Jehovas und Bluttransfusionen, MedR 1999, 265. 법원이 친권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시키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

24) Gesetz zur Erleichterung familiengerichtlicher Maßnahmen bei Gefährdung des Kindeswohls. 2008. 7. 12. 시행. 자세한 내용은 김상용,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구”, 『법학논문집』 제36집 제3호(2012. 12.), 84면 이하 참조.

25) 예를 들면 독일사회법 제8편 제27조가 규정하는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컨대, 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관련 상담을 하는 것, 탁아소와 유치원의 자리를 제공하는 것, 방과 후에 부모들이 직접 돌보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를 받도록 명하는 것)²⁶⁾에서부터 친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실, 부모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

(2) 우리의 경우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²⁷⁾)이라고 한다) 제정에 의해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도입되기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로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²⁸⁾ 이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위에서 본 우리사회의 사례들에서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는 청구되지 못하였다.²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법원에 통지하여 개입을 촉구할 수 있었던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었다.

우리사회의 세 번째 사례를 보면 당시 우리 법체계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그 사안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아산병원의 청구에 따라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채무자(자녀의 부모)와 채권자(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

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이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만일 그 사건이 발생한 2009년 당시 법원이 독일의 1994년 사례와 같이 - 친권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면, 병원 측은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술과 수술을 실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당시에 법원이 친권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이 청구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법원에 그러한 청구가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즉 법원이 친권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해도, 청구인의 범위가 자녀의 친족, 검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실제로 병원 측이 직접 법원에 이러한 결정을 청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친족이나 검사 등의 청구권자가 청구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그러한 사안에서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이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음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법원에 개입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9년까지도 우리사회에는 이러한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독일이 1960년대에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로 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낡은 법체계에 안주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아동의 복리에 대한 우리사회,

을 제공하는 것,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학교와 직업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또한 부모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예컨대 영유아 양육교실, 폭력성향을 교정하는 강좌 등)에 참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6) 부모가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신속하게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Sternal/Giers, 21. Aufl. 2023, FamFG § 95 Rn. 14); Johannsen/Henrich/Althammer/Jokisch, 7. Aufl. 2020, BGB § 1666 Rn. 114.

27) 법률 제12341호. 2014. 1. 28. 제정. 2014. 9. 29. 시행.

28) 민법 이외에 아동복지법(제18조), 가정폭력처벌법(제40조, 제55조의2) 등에도 친권상실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아동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사실상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

29) 또한 설령 친권상실선고가 청구되었다고 해도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는 조치로 이어지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위에서 본 세 사례가 발생할 당시에는 부모가 친권을 상실하면 법정후견이 개시되어 자녀의 조부모 등이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2011년 개정 민법 시행 전 제932조, 제935조, 제936조), 이러한 후견인이 자녀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행위에 동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의 낮은 인식 수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비교 검토

과거 한국과 독일, 두 나라의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법체계에서 드러난 차이는 완전히 상반된 결말로 귀결되었다. 독일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앞서, 후견법원이 신속하게 민사적 구제수단을 사용하여 개입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후의 문제로 다루어졌다(참고로 위의 1966년 독일 사례에서 법원은 부모를 형사처벌하지 않았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민사적 구제수단(부모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친권의 일부 상실과 후견인 선임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였고, 사후에 부모를 형사처벌하는 데 그쳤다.

위에서 본 두 나라의 사례들은, 아동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법체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III.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도입 성과와 한계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³⁰⁾ 그전까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특히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는 친권의 행사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학대로 희생된 아동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는 하나의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들이고 스스로 이익단체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공론화시킬 수도 없었기에 국회에서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법개정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아래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제정된 경위와 그 성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제정 경위³¹⁾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는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정책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고 한다)’에서 논의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마련되었다. 연구모임은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적 절차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구성된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모임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7월에 걸쳐 약 1년간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가정법원 판사,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법학교수, 사회복지학 교수, 소

30)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처음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아동학대예방센터는 2006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되었다.

31) 자세한 내용은 김상용,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친권법의 개정”, 『중앙법학』 제20집 제3호(2018. 9.), 85면 이하 참조.

아과 및 소아정신과 의사, 국회입법조사관, 변호사, 연구원 등이 참여하였다. 연구모임의 참석자들은 1966년 독일 사례에서 나타난 독일의 아동학대방지체계를 염두에 두고, 선진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법제도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안을 기초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었는데,³²⁾ 법안 제14조(보호조치)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1.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명령
2. 친권행사의 정지명령 또는 후견직무의 정지명령
3.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퇴거 및 출입금지명령
4.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5.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수강명령
6.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조치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조치
7. 피해아동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수강명령
8.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이 규정이 후에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모태가 되었다).³³⁾

2.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도입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1) 신속한 보호 조치

앞에서 본 독일과 우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사건에 있어서 신속한 조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아동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심각하게 학대하여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선 아동을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하는 조치를 취한 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부모가 친권자임을 내세워 아동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실질적으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020년 법 개정 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청구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1호(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격리조치), 제5호(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치료위탁하는 조치), 제7호(아동학대행위자의 친권행사 정지 또는 제한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임시보호명령으로도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보호조치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에서 본 우리의 사례들과 유사한 사건이 발

32)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12. 11. 15.).

33)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김봉수, “학대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7권 제4호(2017), 35면 이하), 이는 두 제도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현재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실질적으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청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위의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에는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제47조 제7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제9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정법원이 이러한 명령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아동의 복리를 가능해 본다면, 그 차이는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생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신속하게 부모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면,³⁴⁾ 후견인이 거소지정권을 행사하고 자녀를 위한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동의를 거부한다고 해도 자녀를 위한 의료적 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나아가 가정법원은 직접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9호)을 할 수도 있으므로, 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필요한 의료시술을 시행하여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민사적 해결 방안의 도입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은 민사적 성격의 보호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그 법명만을 놓고 보면 형사특별법의 일종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그 안에 민사적 성격의 보호조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법체계상 어색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아동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대응과 더불어 민사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예를 들어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 대해서 형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구속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격리, 친권행사의 정지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아동학대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에 민사적 성격의 보호조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상당수

의 아동학대사건에 있어서는 굳이 아동학대행위자를 처벌하지 않고도 민사적인 구제수단을 활용하여 아동의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앞에서 본 독일의 1966년 사례에서도 법원은 친권의 일부상실, 후견인 선임이라는 민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구할 수 있었으며,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해당 아동의 부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1994년 독일 사례에서도 법원은 부모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형사적 조치는 개입되지 않았다).³⁵⁾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지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 애초에 법무부가 우려했던 바³⁶⁾와는 달리 -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아동학대처벌법의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근거, 그로 인하여 실무상 운용에 혼란이 초래되었다는 비판은 제기되지 않았다. 반대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처벌법에 있어서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한계

1) 예방적 조치의 결여

아동학대가 우려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때에는 아동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단지 관찰을 하는

34)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5항 및 제52조 제3항에 의한 제23조의 준용.

35) 2016년도 전체 아동학대사례 18,700건 중 고소 고발, 수사의뢰,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형사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6,018건(전체의 32.2%)이다(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44면). 따라서 나머지 아동학대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과 같은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그 후의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20년 아동학대사례건수 30,905건, 고소 고발 건수 11,209건.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 38면; 2023년 아동학대사례건수 25,739건, 고소 고발 건수 11,469건. 보건복지부, 2023 아동학대 주요 통계, 32면).

36) 법무부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초가 되었던 남인순 의원안 제14조(보호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보호조치 제도는 민 형사상 요소가 혼재된 독자적인 제도로서 민사 형사를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와 조화되지 아니하고, 운영상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관련법」 제정 관련 공청회 자료집(2013. 4. 22.) 참조.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조기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적절한 예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학대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었을 때(어느 날 아동이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골절 등의 증상을 입었을 때) 사후에 비로소 개입하는 방식으로는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어렵다.

아동학대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취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로는 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강의를 수강하게 하거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또는 부모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치료위탁을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³⁷⁾ 부모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양육에 관한 상담과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하여 양육태도가 교정된다면, 이러한 조치만으로 이미 충분한 효과를 거둔 것이므로, 더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예를 들면 친권행사의 정지, 격리 조치 등)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이렇게 되면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부모가 법원의 상담 또는 교육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양육방식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으로서 는 다음 단계로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남인순 의원 안 제14조의 보호조치에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수강명령”(제5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해아

동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보호명령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모가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양육태도를 교정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동학대예방과 아동의 보호라는 아동학대처벌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수강명령”이 피해아동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³⁸⁾

2) 청구인의 범위

①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당시에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2020년 일부 개정³⁹⁾에 의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대체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당시에 원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었던 신고 접수(제10조), 현장 출동 및 조사(제11조), 응급조치(제12조) 등의 업무가 전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넘어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으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실질적으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⁴⁰⁾)이 추가된 것은 이해할 수 있다(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

37) 김상용,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새로운 입법방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의견-”, 가족법연구 IV, 법문사, 2014, 70면; 현소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2017. 8.), 406면; 안소영, 안현주,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2호(2020. 8.), 149면; 김수현,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의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 자료집(2020. 8. 5.), 52면; 배인구(연구책임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20), 126면; 곽지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8권 제2호(2023. 12), 349면.

38) 2008년에 개정된 독일민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아동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온건한 조치(예컨대 양육 상담을 받도록 명하는 것)로부터 친권상실과 같은 강한 조치까지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제1666조 제3항). 자녀의 양육에 문제가 있는 부모가 아동청이 제안한 지원서비스(양육에 관한 교육수강 등)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복리가 심각하게 위태로운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아동청은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부모에 대하여 양육에 관한 교육을 수강하도록 명할 수 있다.

39) 법률 제17087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40)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②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조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제4항).

다. 제47조 제2항). 그러나 청구인의 범위에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추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배제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여전히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하는 경우 바로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동학대사건은 신속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경유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체계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② 위의 독일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아동학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가정법원에 직접 통지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불필요한 요소(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지자체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이중 절차)도 끼어들지 않는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누구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전반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당장은 무리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아동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예를 들어 의사,⁴¹⁾ 교사 등)에게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방식을 간이하게 하여(예를 들면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면 또는 말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법⁴²⁾)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부담 없이 가정법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2020년 10월 16일 한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인하여 1년 6개월의 짧은 삶을 마감하였다(‘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학대는 장기간 이어졌으며, 그 기간 동안 세 차례의 신고(2020년 5월 23일, 6월 29일, 9월 23일)를 통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학대의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5월 23일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으며, 6월 29일에는 양부모의 지인이 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다. 9월 23일에는 정인을 진료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였다(어린이집 원장이 양부모 몰래 정인을 소아과에 데려가서 진료가 이루어졌음). 이러한 가정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외에 의사, 어린이집 원장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예에서 의사가 직접 후견법원(현재는 가정법원)에 연락하여 결국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냄으로써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듯이, 정인이를 9월 23일에 진료한 의사가 가정법원에 직접 통지하여 친권의 정지나 제한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면 우리는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 지도 모른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나 어린이집 원장이 비교적 용이하게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던 것처럼, 가정법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비

41) 같은 취지의 의견(친권상실선고의 청구권자에 의사를 포함시키자는 의견)으로 金天秀, “患者의 親權者 後見人の 同意權”, 民法學論叢, 第二: 厚巖郭潤直教授古稀紀念, 博英社, 1995, 466면 참조.

42)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조 제3항에 의하면 “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로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본다. 1966년 독일 사례에서 의사가 법원에 전화하여 구두로 개입을 요청하고 판사가 이에 응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이, 우리사회에서도 의사(또는 교사) 등이 부담 없이 법원에 연락하여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록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과제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적어도 고민을 해 볼만 한 가치는 있을 것이다.

④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2020카합21009 결정(진료업무방해금지 가치분신청)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아이 갑(신청외인. 2016. 8. 23. 출생)은 ‘CASK 연관 간질발작 뇌병증’으로 진단받아 위 뇌병증에서 유래한 폐렴으로 인해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 상태로 폐렴 치료를 받고 있었다. 서울대 병원 의료진은, 갑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경우 기도 부종 및 협착으로 호흡곤란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이유로 갑의 아버지에게 기관절개술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그런데 갑의 아버지는 경제적 이유 등을 들어 기관절개술을 거부하였다. 이에 채권자인 서울대학교 병원은 “채무자는 채권자가 신청외인에 대하여 행하는 기관절개, 산소공급, 약물투여 및 영양 수분공급 등 구명(求命)을 위한 일체의 치료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관절개술 전 퇴원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치분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5. 10. 16. 시행된 민법 제922조의2는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를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여, 친권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치료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이 마련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집행법상 가치분절차를 통해 사실상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922조의2에 기한 재판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그 절차로는 자녀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긴급한 보전이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채권자는 민법 제922조의2에 기한 재판을 거치지도 않은 채 실질적으로 친권자인 채무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과연 이 사건 신청이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권자에게는 민법 제922조의2에 기한 재판의 당사자자격이 없어 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와 같은 절차로는 신속한 재판이 어려우므로, 가치분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채권자가 드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민법 제922조의2가 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위 절차로는 신청외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긴급한 보전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친권자인 채무자의 동의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례에서도 의사(또는 병원)가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직접 가정법원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9호)을 청구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⁴³⁾ 아동학대를 현장에서 인지한 당사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지 못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아동

43)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므로(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및 동법 제17조 제6호(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된다. 위 결정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신청외인에게 기관절개술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닮음이 없어 그에 대해 형법상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면(채권자의 주장이 그러하다), 친권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9호)을 통해서도 신청외인에 대한 기관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채권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사전에 검토해보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라고 하고 있으나, 자녀의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 거부는 굳이 형법상 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 가정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친권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과의 확실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위의 정인이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3) 전문성의 부족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판정에 있어서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현저한 외상을 남기는 신체학대의 범위를 넘어서 정서학대, 방임, 반복되는 경미한 체벌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인데, 전문가가 인내심을 가지고 조사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아동학대사건에 있어서는 전문아동기관(독일의 아동청, 미국의 CPS 등)이 1차적으로 개입하여 사례를 조사하고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나라가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대응체계를 갖추게 된 이유는 아동학대사건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사건의 상당수가 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예외 없이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물론 아동학대사례가 심각하여 전문아동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1차 현장조사의 역할을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맡기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당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의 역할을 맡았으나, 2020년 개정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그 역할을 대체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2000년대 초반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현장 출동의 임무를 맡긴 것은 아동학대사건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수사기관만으로 아동학대사건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별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의해서 이제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 등의 업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넘어 갔는데, 공무원 순환 근무의 특성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평균 1.3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⁴⁾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경험의 축적에 따른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에서의 1차적 개입과 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보충과 전문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참고로 독일에는 국가기관인 아동청이 전국에 약 600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동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는 55,000명이 넘는다(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 아동청에서 근무한다).⁴⁵⁾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는 2024년 6월 현재 875명으로 알려져 있다.

44) EBS 2024. 9. 18. 보도. “1년 만에 짐 싸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대체인력 없는 지역도 55곳.”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고용형태별 유형에 따른 인원수를 살펴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국 875명 중 761명(87%)이 일반공무원이었다. 계약 근로 형태인 '일반임기제'는 89명(10.2%)이었으며, 순환 배치 대상이 아닌 '전문경력관'은 전국을 통틀어 4명(0.5%)이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019년 36,920건에서 2023년 45,771건으로 5년 새 24% 증가했으나,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21년 37,605건(의심사례의 72.2%), 2022년 27,971건(62.8%), 2023년 25,739건(56.2%)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뉴스 1. 2024. 9. 18. 보도. “1년만에 짐싸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평균 근속 14.9개월.”

45) Statistisches Bundesamt.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Soziales/Kinderhilfe-Jugendhilfe/Tabellen/einrichtung-taetige-personen.html>; Arbeiten im Jugendamt: Karriere und Perspektiven. <https://www.academics.de/ratgeber/arbeiten-im-jugendamt>.

〈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2014~2023)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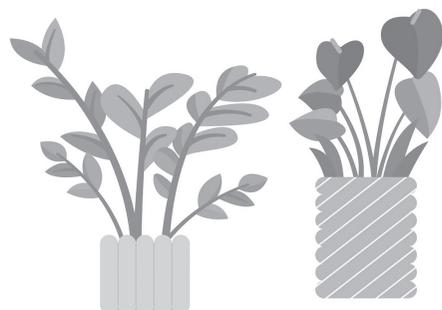
연도	청구인	아동보호 전문 기관장	변호사	피해아동 법정 대리인	피해아동 본인	판사 직권	시·군· 구청장	파악 불가	총계 (건)
	건수								
2014	보호결정	18	4			8			30
	보호결정기각	2	0			-			2
	총수	20	4			8			32
	임시보호결정/기각	14/6	-/4			7/1			21/11
2015	보호결정	79	68	4		2			153
	보호결정기각	9	8	0		0			17
	총수	88	76	4		2			170
	임시보호결정/기각	92/0	55/0	4/0		0			151/0
2016	보호결정	127	21	1		50			199
	보호결정기각	30	4	1		3			38
	총수	157	25	2		53			237
	임시보호결정/기각	139/10	17/7	4/0		43/5			203/22
2017	보호결정	239	70	12	5	1		18	327
	보호결정기각	18	1	6	0	0		0	25
	총수	257	71	18	5	1		18	352
	임시보호결정/기각	169/88	51/20	8/10	1/4	0/1		0/18	229/123
2018	보호결정	235	54	13	6	6			314
	보호결정기각	22	3	1	0	0			26
	총수	257	57	14	6	6			340
	임시보호결정/기각	171/86	34/23	4/10	1/5	3/3			213/127
2019	보호결정	327	64	33	3	4			431
	보호결정기각	36	2	0	0	0			38
	총수	363	66	33	3	4			469
	임시보호결정/기각	204/159	49/17	21/12	1/2	1/3			276/193
2020	보호결정	510	43	31		11	47	2	644
	보호결정기각	74	1	1		0	7	4	87
	총수	584	44	32		11	54	6	731
	임시보호결정/기각	309/275	33/11	14/18		8/3	32/22	0/6	396/335
2021	보호결정	74	8	6		1	128	19	236
	보호결정기각	15	0	1		0	2	1	19
	총수	89	8	7		1	130	20	255
	임시보호결정/기각	47/42	4/4	3/4		0/1	72/58	8/12	134/121
2022	보호결정		7	5	2	0	68	6	88
	보호결정기각		0	0	0	0	3	1	4
	총수		7	5	2	0	71	7	92
	임시보호결정/기각		6/1	2/3	0/2	0/0	28/43	3/4	39/53
2023	보호결정		5	24	3	2	99	0	133
	보호결정기각		0	2	1	0	15	0	18
	총수		5	26	4	2	114	0	151
	임시보호결정/기각		3/2	16/10	1/3	2/0	67/47	0/0	89/62

옆의 표를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대체한 이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사이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최근 5년 사이 81.7% 증가. 2016년 29,674건, 2017년 34,169건, 2018년 36,417건, 2019년 41,389건, 2020년 42,251건, 2021년 53,932건, 2022년 46,103건, 2023년 48,522건),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IV. 맺음말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는 시행 이후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동안 드러난 한계 역시 분명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청구인의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나 교사와 같이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지 못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중절차는 신속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아예 청구되지도 못한 채 아동학대가 사실상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아동학대 사건을 접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방식과 절차를 간이화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부담 없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1966년 독일에서 의사가 직접 후견법원에 전화를 하여 개입을 요청한 사례를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아동학대방지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

의 개선이 시급하다. 아동학대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독일에서 아동학대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아동청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직원의 수가 약 55,000명인 반면,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는 2024년 현재 875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독일의 아동청 직원은 보통 평생을 아동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데 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평균 근무 기간은 15개월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험치와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2023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에 관한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청구한 건수가 114건인 반면, 변호사에 의한 청구는 5건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아동학대방지에 있어서의 최선의 방책은 선제적으로 사례에 개입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학대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인지되었을 때 계속 지켜보다가 심각한 학대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개입하는 것은 아동학대방지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 다만 학대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친권을 정지시키거나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가정법원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예방적 조치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종류로서 추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이 부모에게 상담, 교육수강명령을 하고, 추이와 변화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대응하여 그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민법 제정과 1차 가족법 개정 1948~1962

제2장 민법 초안에 드러난 불평등적 요소 (5)

2. 보수세력과의 대립-국회 공청회(3)

한편, 이태영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는 형식혼주의의 부당론이며, 둘째는 동성동본 금혼 원칙 부정론, 셋째는 여성의 친족상속법상 지위 향상론이다. ‘형식혼주의의 부당론’에서 이태영은 “공청사항 제7 혼인의 성립 요건으로 형식혼주의를 채택한 초안과 심의요강에 대해 약간 다른 견해를 말하겠다”고 전제한 후 형식혼주의를 절대 강행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형식혼주의는 아직 우리 일반 민중에게 생활화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형식혼주의의 강행은…… 사회적 모순과 사회악의 조성에 근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헌법 정신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부녀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는데, 한국의 법률이 한국의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혼인 성립에 있어서 형식혼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일지라도 동거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거나, 소생 자녀가 있다거나, 기타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할 만한 조건을 구비한 자라면 남편 아내 또는 그 자녀들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의 판결로써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선언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이태영은 ‘동성동본 금혼원칙 부당론’에서 현행 관습법과 초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얼마나 허구에 찬 미풍양속론인가를 찬성론 유형별로 설명한 후 “그렇게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이라면 100대 200대 300대로 올라가서 그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논리라면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피가 누구의 피인가 한번 검토해 보면 마지막에는 단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야 할 것이다”라고 해서 공청회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태영은 “친족상속법 전체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를 올바르게 생각하라!”고 호소했는데, 이태영의 주장은 시종일관 장내를 숙연케 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친족상속법이라면 재래의 관습법입니다. 이 관습법은 전통과 인습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절대로 개혁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친족상속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명석한 과학적인 현대인의 태도로서 이 법률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를 만민은 평등하다, 국민은 다 평등하다, 남

***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이 1948년 9월 15일 구성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마련한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남녀차별적 성향을 지적하고 이의 개정을 위해 나선 데 이어 상담소는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여 동성동본 금혼 폐지와 호주제 폐지를 관철하였다. 이러한 가족법 개정운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률구조 사업과 나란히 상담소의 주요한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창립 반세기를 맞은 상담소는 기존의 ‘상담소 30년사’와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를 정비하기로 하고 200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와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를 펴낸 바 있다.

앞서 <가정상담>에 상담소 50년사를 요약 게재한 데 이어 앞으로 상담소가 주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한 역사가 된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를 연재한다.

자 국민만이 아니고 여자 국민만도 아니다, 남자 여자 남녀평등의 원칙, 부부평등의 원칙, 부모평등의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이제 제정된 모든 법률은 이 헌법정신의 기초 위에서 이것과 위반되는 법률은 존재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상속법에 있어서 헌법정신이라는 커다란 구호를 내걸고 비추어 보아서 이 헌법정신과 위반되는 제도가 있다면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남성이 보는 입장에서는 순풍미숙이 될는지 모르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들여다본다면 그 풍속과 그 제도는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라고 생각한다면(박수) 그 순풍미숙은 결코 객관적으로 타당한 한 개의 사실로서의 순풍미숙이 아닙니다. ……한국의 아내는, 한국의 딸은, 한국의 며느리는, 한국의 어머니는 과거의 봉건적인 가족제도로 인하여서 한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 우는 소리를 여러분의 귀로 넉넉히 듣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아내요, 가족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주저없이…… 용기가 충분히 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민의 원으로 당선시켜 보낼 때에는…… 민주입법을 제정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물각한 한국 친족상속법의 입법은 잠시도 이 헌법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태영 다음으로 여성계의 간절한 뜻을 전달한 사람은 대한가정학회 회장인 표경조 숙명여대 교수였다. 표경조 교수는 호주상속의 남녀평등론, 서양자의 인정, 여자의 모성론, 재산상속상 남녀 평등론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봉건적이며 비민주주의적인 호주제도를 반대하나 굳이 폐지할 수 없다면 호주제도에 있어서 여자 또는 처의 지위에 관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남녀평등이라는 민주주의 헌법 이념에 비추어 직계비속에 남자가 없고 여자가 있는 경우에 남자를 양자로 하지 않고 딸에게 호주상속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표경조는 재산상속상의 남녀평등론에 있어서도 법사위가 내놓은 심의요강과 초안이 처의 재산상속권을 다소 향상시켰다고는 볼 수 있으나 부부평등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초안 또는 법사위의 요강은 부부평등주의 사상에 일치하지 못하였다고 논박하였다.

이 밖에도 대한YWCA에서 대표로 나온 최희섭의 '부부별산주의·공유추정주의·재산분여제도에 관한 의견'과 여학

사회 대표 홍용숙의 '적모서자간의 법정혈족관계 폐지론' 등이 여성계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이들 주제 가운데서 공청회의 가장 큰 논쟁거리는 동성동본 금혼규정과 호주상속권이였다. 특히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서는 여성계와 유림의 극단적인 의견대립이 있었다. 서울 유도회 소속 최찬익은 '동성동본간의 혼인 금지 규정 필요론'에서 동성동본 금혼 폐지론은 언어도단이라면서 "이 민법 요강에 보면 8촌까지는 친족이라 했고 9촌부터는 친족이 아니라고 했으니 9촌부터는 혼인을 진행하는 이런 놈의…… 기괴망측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질러 폭소를 자아냈다. 같은 유도회 소속 김종렬 역시 동성동본 금혼규정 철폐를 반대함으로써 유림의 입장을 뚜렷이 했다.

그러나 근친혼 이외의 동성동본자 간의 혼인에 대해서는 변호사 최백순, 여주지법 판사 박주운, 부산대 교수 제길우 등 법조계·학계 인사들이 찬성의 견해를 나타냈다.

이날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신고혼제(형식혼제)보다는 사실혼제를 주장하는 의견이 강하였고, 분가제도의 희망은 모두가 찬동하고 있어 입법상 채택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극단적으로 의견대립을 보인 동성동본 금혼규정과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에 있어서 남녀차별 문제는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관습법이 그대로 통과되고 말 것이라는 예감을 갖게 했다.

공청회 이후 여성단체들은 유림 등 사회 특정단체들로부터 무수한 비난과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태영 등 여성계는 어떠한 압력과 반대에도 굴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1956년 8월, 변호사 이태영이 '여성법률상담소' 문을 열자 "4천 년 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상담소 앞에 줄 선 억울한 여성들의 행렬은 한국의 1,500만 여성들의 법적 지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편집부

사업 부진이나 경기 불황으로 인한 경제 갈등이 폭력 상황으로 이어져, 상담 통해 비폭력대화 익혀 갈등 위기 벗어나

2021버3**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4회,
음주문제상담 4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화상으로 실시),
집단상담 4회(화상으로 실시),
교육강좌 1회 (화상으로 실시)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음주문제상담 3회(화상으로 실시),
집단상담 7회(화상으로 실시),
교육강좌 1회 (화상으로 실시)

등 총 30회

상담기간

2021. 12. 7. ~ 2022. 11. 3.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29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2남(30세, 25세)이 있다. 행위자는 2020년 12월 사건당일 회사운영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목을 잡아 조르며 미는 등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초상담시 부부갈등 및 사건 발생 원인으로 피해자는 행

위자가 자신을 무시한 점을, 행위자는 부부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미숙한 점을 꼽았다. 상담에 대한 기대로 피해자는 행위자가 부드럽게 말하게 되기를, 행위자는 부부의 감정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피해자가 모임 횟수를 줄이기 바랐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비폭력대화를 실천하고, 행위자는 절주하기로 약속하였다.

행위자는 물론 피해자도 상담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음주문제상담에 참여하며 음주문제를 이해하고 절주 노력을 하였으며, 집단상담에 참여하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갔다.

종결상담시 피해자는 그동안 부부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등의 폭력적 대화를 하지 않았고 비폭력적으로 대화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행위자와의 관계만족도를 사건당시는 0점, 상담종결시는 10점 만점에 7~8점이라고 평가하였다. 행위자 역시 부부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고 상호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한 점을 변화로 꼽았다.

2021버2*** 재물손괴,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3회,
집단상담 5회(화상회의 플랫폼
줌 (Zoom)을 활용하여 실시),
교육강좌 5회(화상으로 실시),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총 16회

상담기간

2022. 2. 11. ~ 2022. 11. 2.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20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남 2녀(20세, 19세, 13세)가 있다.

행위자는 2021년 6월 사건당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생활비, 교육비)을 이야기하면서 행위자의 가슴을 몇 차례 때리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결혼기간 중 피해자와 특별한 갈등이 없었고 음식점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경영상태가 갑자기 어려워진 가운데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초등학생인 막내딸이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고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하였다. 그러나 가게는 결국 폐업하였고 행위자는 지인 회사의 건설현장 관리직으로 취업하여 3월 초부터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해자와 다른 갈등은 없으며, 자신은 가장으로서 경제적 부양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행위자가 생업을 유지하면서 보호처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주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상담 계획을 수립하였다. 행위자는 개별상담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 동영상 시청하고 '알았던 내용들이지만 망각하고 살았다'고 하면서 향후 신체폭력은 물론 언어폭력, 정서폭력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피해자도 특별한 갈등 요인은 없다고 하면서 사건당시 및 중간점검시 행위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10점으로 평가하였다. 행위자에게 더 바라는 바는 없었으며 행위자가 운동할 때 피해자도 같이 가는 등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변화를 보고하였다.

종결상담시 행위자는 여전히 피해자와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 행위자는 사건 발생시 부부갈등이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폭력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잘못이라고 반성하였

고, 상담을 통하여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어떠한 폭력도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2021버3***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5회,
집단상담 5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실시),
교육강좌 1회 (화상으로 실시)

관계인(아내) 전화상담 2회

등 총 18회

상담기간

2022. 4. 1. ~ 2022. 11. 2.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아들, 21세)의 아버지이다. 아내인 관계인과는 사실혼관계로 지낸지 25년이 경과하였다. 행위자는 사업상 어려움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만 등록되어 있다.

2021년 10월 사건당일 밤 치킨과 피자를 가족과 함께 먹고 방에 들어간 행위자는 관계인과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가 '악' 소리를 내자 시끄럽다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집안을 돌아다니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에 대항하여 행위자의 양팔을 잡은 뒤 머리와 목을 감싸안아 넘어뜨려 목을 누르고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를 말리던 관계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행위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에서 본소에 6개월간 상담위탁되었다.

사건 이후 행위자는 관계인에게 별거를 제안하여 받은 돈으로 방을 구하여 11월 초부터 혼자 살았다. 행위자는 그동

안 사는 데 여유가 없고 힘들다 보니 부부가 거칠게 대화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가 한쪽 시력을 거의 잃어 자신감도 없어진 상태에서 관계인과 처가 식구들의 무시와 간섭을 더 참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하여 좋다고 하였다. 2022년 3월경 피해자가 전화하여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관계인도 집에 들어오기를 권유하였지만 행위자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며 조금 더 혼자 지내겠다고 하였다. 상담에 대한 기대나 바람은 없었고 법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관계인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행위자에게 불만이 있었는데 특히 10여 년간 관계인이 가정 경제를 책임진 것을 알기에 사건당일 행위자에게 ‘엄마가 불쌍하지 않느냐’고 한 것인데 행위자가 ‘뭐가 불쌍하냐’고 하자 감정이 폭발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건 이후 행위자가 별거하자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방 구할 돈을 마련해주었고 몇 번 행위자를 찾

아 갔지만 이제는 굳이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자신과 피해자가 사는 집 월세도 책임지지 않고 아들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는 행위자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행위자는 관계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여 상처를 받게 된 이면에는 자신과 관계인의 성격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상황도 아니어서 관계인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미루었다. 그런데 행위자의 지병인 위장병이 심해지면서 부부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종결상담시 행위자는 거동이 힘든 상태로 관계인 집에서 돌봄과 치료를 받으며 재결합을 고려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원하였다. 성실하게 상담받은 점을 격려하고 쾌유를 빌며 피해자와 화해하고 관계인과 재결합할 것을 당부하면서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25년 4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차연실 상담위원 / 천다라 상담위원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차연실 상담위원 / 천다라 상담위원
		4/2	19명	관계의 정석,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4/9	16명	관계의 정석, 나 알아달라고 싸우는 부부	
		4/16	14명	관계의 정석, 좀 봐줘요	
		4/23	14명	관계의 정석, 다 때가 있다	
	4/30	16명	관계의 정석,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슬프게 하는 것		
동지교실		4/9	56명	뒤늦게 오는 깨달음, 후회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어떻게 할까요?



부모와 자녀 ② - 양자, 친양자 ⑨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친양자입양청구가 가능하다

Q 문 55 | 전남편이 사망한 후 재혼을 했는데 아들이 새아버지를 잘 따르고 둘 사이가 친부자 관계 이상으로 친밀합니다. 두 사람 모두 법적으로 친부자 관계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아이는 대학생으로 현재 21세입니다. 친양자입양을 시킬 수 있을까요?

A 친양자입양은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따라서 이 경우 친양자입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일반 입양은 가능하므로 입양 신고를 하면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Q 문 56 |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포기각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시키려고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A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그러나 부모가 친권 상실의 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또한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입양이 가능합니다(동법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자녀의 친아버지인 전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친양자입양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입양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

Q 문 57 | 17세의 고등학생을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먼 친척에게 5년 전에 맡겨두고 아이나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연락 한번 없었고 양육비를 보낸 적도 없습니다. 현재는 아이의 부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부모에게 입양 동의를 받아야만 친양자입양이 가능한가요?

A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그러나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8조의2 제2항). 따라서 귀하는 친양자로 입양될 사람의 입양승낙을 받아 양자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친양자입양청구를 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중에서



Q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던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외동딸인 제가 병원비와 간병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걱정하던 중, 아버지가 평소에 가입해 두신 보험을 발견하고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의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리 청구를 했는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했지만, 가족이라도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으면 대리 청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법원은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피성년후견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은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이를 통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일상생활 및 신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산관리 등에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

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동법 제949조 제1항). 귀하가 아버지에게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의사무능력자인 아버지의 정당한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47조). 더불어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성년후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하고 이러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하면서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이때 법원의 허가를 구하여 대리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항도 명시합니다.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리권 등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 금전을 빌리는 행위
2.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3. 부동산의 처분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소송행위
5.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을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을 할 경우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가입자가 사전에 가족 등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혹은 '지정대리청구 서비스'를 활용하면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 없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다라 상담위원

좋은 책



“삶은 가차 없고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입힐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 마지막에 좋은 이야기를 남기고, 의미 있는 이야기 속에 머물다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작가의 말 그중에서도 마지막 단락의 이 말 ‘가차 없는 삶’이라는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작가의 소설 『이중 하나는 거짓말』에 등장하는 고등학교 2학년 세 아이 앞에 놓인 삶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아서 그랬을 것이다. 이 셋은 각자의 이야기와 거짓말을 통해 조금씩 가까워지는데 그 과정에서 셋은 여러 사건으로 인해 저마다 소중한 것을 잃어간다. 그렇지만 그렇듯 비정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고통에만 매여 있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용기 있게 들여다보며 어루만지는 위로를 통해 그 시절을 통과해 간다.

그해 우리 셋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고
처음으로 가까워졌다

그건 하나의 비밀이 다른 비밀을 돕는다는 뜻이었다

책의 제목인 ‘이중 하나는 거짓말’은 소설 속 담임 선생이 만든 ‘자기소개’ 게임이다. 새 학기가 되어 학생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다섯 개의 문장으로 스스로 표현하되 그중 하나에는 반드시 거짓을 포함시켜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아맞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나는 핫도그 속 소시지는 안 먹고 빵만 먹는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학교 담장을 넘은 적이 있다’와 같은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면, 다른 학생들은 그중 과연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일지 추측함으로써 “그 과정 자체가 발표자에 대한 관참은 자기소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짓말에는 단순히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재미 삼아 함정처럼 파놓은 것도 있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어떤 일을 그 문장을 통해서나마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슬그

머니 섞어놓은 것도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누가 들어도 명백한 거짓 같아서 모두 웃어넘길 수 있기”를 바라며 혼자서 오랜 시간 감당해야 했던 어떤 비밀을 내뱉기도 한다. 소설의 세 주인공이 처음 서로를 의심하는 계기도 바로 각자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다.

셋 중 지우는 최근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의 애인과 한집에 산다. 지우에게 남은 소중한 존재는 반려 도마뱀 용식이뿐이다. 함께 산 지 삼 년이 된 엄마의 애인 선호 아저씨가 있지만 자신이 선호 아저씨에게 짐이 되리라고 여긴 지우는 겨울방학 동안 돈을 벌어서 독립할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반 아이들이 ‘이상하다’고 수군대는 친구 소리에겐 일하는데 데려가기 어려운 용식을 맡긴다. 소리는 어려서부터 타인과 손을 잡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 마지막으로 채운은 일 년 전 여름밤 ‘그 일’이 벌어진 후, 엄마는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리고 이모네에 반려견 멍치와 머물고 있다. 채운은 누군가의 죽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소리에겐 무엇을 부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중 하나는 거짓말』은 서로의 비밀을 엿본 이후 서로에게 호감을 비치기도,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면서 세 아이가 만들어가는 우정과 거짓말, 그림과 죄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우는 만화를 그린다. 지우가 채운에게서 본 것은 무엇이였을까.

삶은 누구에게든 가차 없지만, 세 아이가 너무 일찍 닳친 가차 없는 삶의 시간을 잘 통과해 가길 바라는 마음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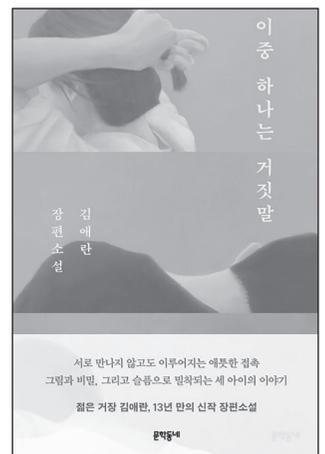
1980년 생인 김애란 작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를 졸업했고, 2002년 4학년 때 단편소설 〈노크하지 않는 집〉으로 제1회 대산대학문학상 소설 부문을 수상하여 이 작품이 2003년 문예지 〈창작과 비평〉 봄호에 실리며 등단했다. 작가의 작품 중에서 『두근두근 내 인생』 『바깥은 여름』이 기억에 남아 있다.

이숙현 편집부장

이중 하나는 거짓말

김애란 장편소설

문학동네, 2024(1판 6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수를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동계방학 동안 현장체험 연수를 마친 대학생들의 소감을 싣는다.

권 윤 아

이화여대 경영학부

배 예 은

이화여대 사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두 달간의 현장실습을 마치며, 짧다면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수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담소가 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라 고만 생각했지만, 직접 현장에서 경험해 보니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법률 지원과 사후 관리까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상담소의 여러 업무를 진행하며 법의 역할이 규범으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권 및 양육권, 입양, 이혼과 관련된 소송관련 서류의 구조실습에서, 그리고 전화 상담연수를 통해 다양한 가사 사건을 접했을 때는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섬세한 태도와 공감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에 참석했던 경험도 뜻깊었습니다. 이론으로 배우던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각 사건을 어떻게 검토하고 판단하는지를 직접 들으며 실무와 학문이 연결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익히는 것에서 나아가, 현실에서 법이 가지는 역할과 한계를 더욱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는 태도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법을 공부하면서도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무와 현실 속에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현장실습은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첫 실습이었기에 어떤 일이든 배우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였으며, 학부 졸업 후의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실습이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법조인이 되지 않더라도 가족법은 실생활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분야이기에, 상담소에서의 경험이 소중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실습을 통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사업과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 상담 연수와 상담 참관을 하면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단순히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잘 몰라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상담을 참관하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서울가정법원 상담 참관 중 한 내담자가 눈물을 흘렸던 일이었습니다. 국제결혼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혼의 복잡한 법적 절차와 더불어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정서적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상담소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가족법과 법률 상담의 현실을 배울 수 있었던 점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법이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조금이라도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 세 중

동국대 법학과

2월 한 달 동안 현장실습을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매일 출근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나의 예상보다 하루에 이혼과 같은 가사 사건으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 가정폭력이 흔한 일이라는 것, 그러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기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걸려오는 상담전화를 받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상담소에서 상담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간단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였다.

서울가정법원으로 2회 참관 실습을 가며 그곳에서 진행되는 가정법률상담을 참관하며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나의 진로를 조금 더 확고히 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동기부여도 받았다. 상담소에서 실습한 여러 업무를 통해 상담소의 법률구조 업무에 힘을 보탤 수 있고, 또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보람이 느껴졌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 문의하는 내담자가 전화를 끊으며 감사 인사를 했던 것이 계속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자원봉사도 신청하여 봉사활동을 이어가면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며 상담소의 법률구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

이 채 린

동국대 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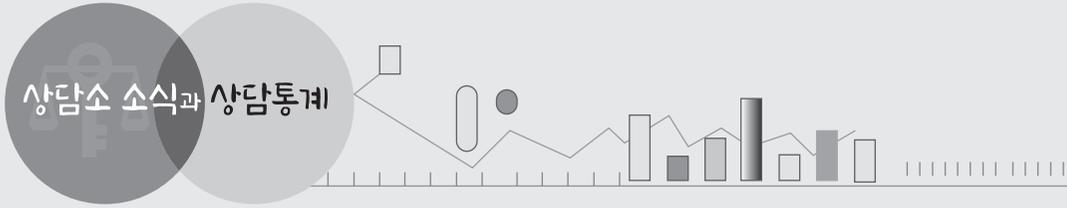
2월 초의 어느 날, 날이 완전히 밝아지기도 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첫 발걸음을 내딛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마치 법률 전문가의 꿈을 이룬 듯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첫날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 다. 계속해서 걸려오는 내담자분들의 상담전화와 익숙하지 않았던 업무 앞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제 첫날은 하루종일 선생님들께 질문하며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날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 실습을 마무리하며 새로 상담소에서 봉사하게 될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료를 만들고 있자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 달 동안의 실습은 항상 기쁜 일만 가득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후회하는 순간도 있었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시는 내담자분의 말에 마음 아팠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행복했습니다. 사이버상담실 답변 연수를 통해 동기 실습생들과 법률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고, 실무 경험을 통해 책으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상담사건을 접할 때마다 판례나 법령을 찾아보며 노력했던 일들이 제게 큰 지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일을 해내면 항상 다정하게 칭찬해 주셨던 선생님들 덕분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법률구조실 습과정 중 소송구조신청을 위해 내소한 내담자분의 본인진술서를 내담자분과 함께 작성했는데, 그 때, 내담자께서 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하신 말씀은 저의 한 달을 더욱 열심히 성실히 살도록 북돋아주었습니다.

상담소의 선생님들께 인사드렸을 때, "채린이는 항상 밝아서 좋아!"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밝은 사람인가 고민해보니, 저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여서 행복했습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세상을 향한 큰 기여에 작지만 함께할 수 있어서,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따뜻한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법률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법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업무협력기관 워크숍

지난 4월 4일 본소 강당에서 202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업무협력기관 워크숍이 있었다. 이날 워크숍은 전국협력기관 임직원들과 본소 객배희 소장 및 상담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본소는 관계법령에 의거 2019년 12월 31일 자로 지부사업을 종료하게 되었고 이후 前 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송구조 연계 등 종전 사업의 대부분을 합리적으로 수행

하는데 뜻을 같이한 바 있었다. 이날 본소와 전국업무협력기관은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각 지역사회의 가정폭력 피해자, 다문화가정, 저소득, 취약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1부에서는 객배희 소장의 인사에 이어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의 사회로 전국업무협력기관 소개 및 인사, 전국업무협력기관 소송구조 사업 등 안내(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복미영 상담위원)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참석자들이 본소에서 주관한 제62회 법의 날 기념 가족법 개정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업무협력기관 〉

지역(前 지부)	전국업무협력기관	주 소	전화번호
구리·남양주	(사)구리가정성통합상담지원센터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구리시여성행복센터 4층 구리가정성통합상담소	031-551-9976
군산	군산가정상담센터	전북 군산시 대학로 36-1(중앙로1가)	063-442-1560
동해	사단법인 바로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188. 1층	033-534-0187
부천	(사)경기가정상담소 부천지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272. 4층(심곡본동)	032-667-2314
성남	(사)경기가정상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46. 1층(야탑동)	031-707-6661
송도	인천우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인천 연수구 샘말로15-2. 2층(연수동)	032-834-1369
수원	(사)경기가정상담소 남부지부 수원가정상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61, 501호(중동, 우림빌딩)	031-243-4600
순천	순천여성상담센터	전남 순천시 호남길3	061-753-9900
울산	(사)울산성가족상담소	울산시 중구 중앙길 127, 3층	052-246-9568
익산	(사)익산가정상담센터	전북 익산시 인북로 168, 2층	063-851-0265
인천	인천가정상담센터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석목빌딩 509호	032-865-1120
전주	전주가정상담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7, 6층	063-244-2930
정읍	정읍가정상담센터	전북 정읍시 중정로 348, 2층	063-535-3705
제천	제천가정상담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6길32, 제천문화회관 3층	043-644-5690
중구	양실가정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청구로 19길 9-15	02-2238-6551
창원·마산	창원가정·성폭력통합상담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3번길7 대한빌딩 401호	055-261-0280
청주	(사)청주가정폭력상담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번길5	043-257-0086
평택·안성	평택가정상담센터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84-6, 평택시평택학습센터 중1층	031-611-4251

당일 전국업무협력기관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전국 업무협력기관 소장·이사장 외 직함 및 존칭생략, 지역 가나다순임).

구리·남양주 - 구리가정·성통합상담지원센터 전병화 센터장, 김남희 / 군산 - 군산가정상담센터 조미영 센터장, 신명애 / 동해 - 사단법인 바로 김혜동 대표, 김서정 / 부천 - (사)경기가정상담소 부천시부 황영숙 소장, 지은정 / 성남 - (사)경기가정상담소 정진경 / 송도 - 인천우리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이영미 소장, 주아미, 정미영, 박은경 / 수원 - (사)경기가정상담소 남부지부 수원가정상담소 박윤선 소장, 최하나 / 익산 - (사)익산가정상담센터 김성란 센터장 / 인천 - 인천가정상담센터 한현애, 김성숙, 박지훈 / 정읍 - 정읍가정상담센터 이현숙, 이영숙 / 중구 - 양실가정상담센터 제오복 센터장, 양영재 / 제천 - 제천가정상담센터 이정미, 임지연 / 창원·마산 - 창원가정·성폭력통합상담센터 서정희 대표, 김지연 / 청주 - (사)청주가정폭력상담소 정복자 소장, 김남영, 조영준, 박정숙 (관련사진 2면)

제62회 법의 날 기념 ‘법률구조제도 (무료법률상담에서 소송구조까지) 홍보 및 가족법개정서명운동’ 진행



본소는 4월 4일 상담소 앞에서 제62회 법의 날 기념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제도 홍보 및 가족법개정서명운동’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의도 직장인 및 여의도 한강 공원을 방문한 서울 시민들에게 가족법 상식, 법률구조 안내 브로슈어 등을 배부하면서 상담소의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안내와 함께 부부재산제 개정,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향 조정, 양육비 선급제도 도입, 비

혼모의 부양청구권 인정, 친생추정조항 개정, 부성원칙조항 개정 등 가족법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였다. 이날 행사는 상담위원 및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였으며, 전국업무협력기관 임직원을 비롯하여 시민 110여 명이 가족법개정서명운동에 동참하였다.

곽배희 소장 서울가정법원 방문

본소 곽배희 소장은 4월 3일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당일 회담에서는 본소의 가정법원 출장상담 및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사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현황과 양 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조가 논의되었다. 서울가정법원 이광우 수석부장과 안복열 부장판사, 본소의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함께 참석하였다. (관련사진 2면)

라몬 막사이사이상 재단 임직원 본소 방문, 곽배희 소장과의 인터뷰

지난 4월 25일 라몬 막사이사이상 재단 임직원들(이하 “RMAF 방문자들”)이 2028년 개관 예정인 라몬 막사이사이상 수상자 도서관 및 박물관에 비치할 공식 기록과 영상 자료 인터뷰를 위해 본소를 방문하였다. 본소 설립자인 이태영 전 소장은 1975년 여성의 자유화를 위한 법적 권리 보호에 대한 기여로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일컫는 라몬 막사이사이상(사회지도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당시 이태영 전 소장은 “수상의 영광을 전 여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상금 1만 달러를 현 상담소 회관의 전신인 여성백인회관의 건축기금으로 기증하였다.

당일 RMAF 방문자들은 상담소 8층 강의실에서 상담소 영화를 관람하고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의 상담소 소개를 들은 후 소장실에서 곽배희 소장과의 이태영 전 소장의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 및 상담소 설립 동기, 그리고 이태영 전 소장 별세 이후 본소의 변화와 발전 현황 등에 관해 인터뷰했다. 이어진 상담소 라운딩에서 RMAF 방문자들은 이태영 전 소장의 별세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된 본소의 눈부신 발전에 경탄하며 역대 라몬 막사이사이상 수상자들

이 몸담았던 기관 중 가장 뛰어난 업적과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본 상담소를 꼽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조를 희망하였다. RMAF 방문자들은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부 이사인 Victor John Platon과 직원 Katrina Mari Dianela, Muriel Vonne Milanés, Lance Joezer Pacada, Danielle Maxene Pesayco, Simone Marie Sales 등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 재판부, 본 상담소 방문

지난 4월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 재판부 일행이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본 상담소의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가정법원과 본 상담소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는 위탁처분이 필요한 가정보호 사건의 급증과 상담 의뢰 기관의 부족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본 상담소가 법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위탁 보호처분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는 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효과적인 가정폭력 행위자 수탁상담을 위한 재판부의 다양한 질의와 본 상담소의 답변, 건의 사항 등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간담회 후, 재판부 일행은 본 상담소의 집단상담 및 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강의실과 개별상담실, 상담소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념실 등을 돌아보았다. 재판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본 상담소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법률구조 사업과 가정폭력 행위자 수탁상담 집행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본 상담소 방문에는 서울가정법원의 안복열 부장판

사를 비롯하여 김동진 부장판사, 김봉남 판사, 김재학 판사, 김선화 판사, 이성열 판사, 이영은 조사관, 김형중 조사관, 백승혜 조사관이, 본 상담소에서는 박소현 법률구조 1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천다라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동대문구 가족센터와 업무협약

본소는 4월 11일 동대문구 가족센터(센터장 한미영)와 가족복리를 위한 가족 상담 교육 및 법적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후회 없이”

- 동지교실 -

지난 4월 9일, 본소 강당에서 개인과 가족의 정신 건강 및 행복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강좌 ‘동지교실’이 열렸다. 이날 강의는 ‘뒤늦게 오는 깨달음, 후회’를 주제로 한국 감정케어센터 이서원 대표가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후회’라는 감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제시했다.

강사는 후회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다며 겉으로 보이는 타인의 행복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삶의 진면목을 촘촘히 들여다볼수록 후회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이 더 오래 남는다는 점을 다양한 일화를 통해 설명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소박한 삶이 진정으로 후회 없는 삶이라고 강조하였다.

과도한 욕심과 끊임없는 비교는 불행을 초래하며, 자신의 분수를 알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의 지혜이며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할 말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행동이 행복한 삶의 시작임을 언급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참석자들은 강사의 진솔하고 유쾌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음 등지교실 강좌는 5월 7일,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드는 마음, 미안함'을 주제로 본소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4.9. 학교폭력예방교육 - 승의여중 - 박상진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4월 18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 참석하였고, 23일에는 서울가정법원 재산분할 사건 조정을 하였다. 그리고 25일에는 본소를 방문한 라몬 막사이사이상 재단 임직원들에게 상담소 역사와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4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었다. 14일에는 서울가정법원 제9회 가정보호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법원 안건을 토의하고, 본소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17일과 18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 혼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2025년 4월 상담통계

총 건수 4,486		
법률상담 (3,812)		
면접	전화	인터넷
1,207	2,477	128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24	41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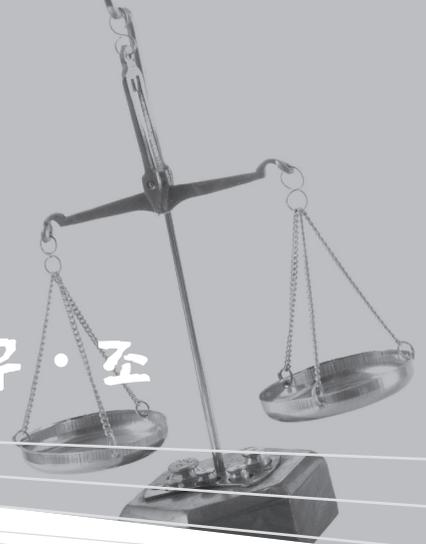
• 인터넷 정보 이용 117,138 건

2025년 4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486건이었다. 상담 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812건(85.0%), 화해조정 524건(11.7%), 소장 등 서류작성 41건(0.9%), 소송구조 109건(2.4%)이었다.

법률상담 3,812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5년 3월에 비해 이혼(27.9%→29.0%), 친권·양육권(3.8%→4.0%), 양육비(8.3%→9.8%), 인지(1.2%→1.4%), 혼인무효·취소(0.4%→0.5%), 부양(0.8%→0.9%), 유언·상속

(8.5%→8.6%), 개명(0.8%→0.9%), 파양(0.0→0.1%), 미성년후견(0.7%→0.9%), 성년후견(2.3%→2.5%), 임대차(0.1%→0.4%), 파산(1.2%→1.6%), 민사기타(0.7%→0.8%), 형사기타(0.6%→1.0%)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812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207건(31.7%), 전화상담 2,477건(65.0%), 인터넷상담 128건(3.3%)이었다.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동반자살 협박을 일삼은 남편에 대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24-1-81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60대)는 2006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피고는 사건본인이 보는 앞에서 원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쥐약을 구매하여 동반자살을 하자고 협박하였다. 2024년경 피고는 사건본인의 우산 문제로 원고와 다투던 중 집의 창문과 문을 모두 닫은 후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고 함께 죽자고 원고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으로 원고와 사건본인은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25. 3.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5. 3. 3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혼인 기간 내내 폭언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24-1-318

담당 : 황미옥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40대)는 2004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원고에게 욕설 및 폭언을 일삼았다. 피고의 폭언은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하고 있을 때, 원고의 부모님 앞에서도 계속되었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을 학대하기도 하였다. 2011년경 피고는 첫째 자녀의 따귀를 때리는 등 학대하였다. 원고는 사건본인들 양육에 피고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전적으로 혼자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다. 2019년부터 원고는 사건본인들과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며 피고와 별거 중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25. 4. 21.)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행한다.
 -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9,000만 원을 지급하되, 2025. 5.부터 2025. 10.까지 매달 말일 1,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

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조정성립일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그 권리 및 변제책임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고,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 4.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말일에 150만 원씩을 지급한다.

5. 피고는 2025. 4.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18:00부터 20: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시하여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기로 한다.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6.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7.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8.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각자 부담한다.

상간녀와 동거하며 혼외자를 출산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4-1-378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1990년 혼인신

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등 가정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는 사업상 골프 접대를 이유로 중국에 출국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가정에 더욱 소홀하였는데, 이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원고는 우울증세를 보였고, 사건본인들은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 2008년경 피고는 약 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가져 탕진하였고, 2011년경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딸을 낳았다.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무기력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친정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렇게 10년 전부터 원고와 피고는 서로 연락도 하지 않으며 별거 상태로 지냈다. 별거기간에도 피고는 자녀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게 하고, 자녀들이 피고의 미지급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2025. 4. 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24-1-422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199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원고와 원고의 친정 가족을 모욕하였다. 2023년경 큰딸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을 때 원고가 친정 가족들의 선물까지 챙긴다는 이유로 고향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피고의 난동은 숙소에 돌아와서도 멈추지 않았고, 귀국한 이후에도 피고는 집기를 던지고, 벨트를 이용하여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급기야 원고의 목을 조르기까지 하였다. 2024년경 피고는 선산에 벌초하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졌

고맙습니다

다. 또한 친정 가족들에 대해 욕설을 하고 원고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원고는 공포심에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5. 3. 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2025. 5.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의정부시 이하생략(○○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이하생략(○○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포함)에 대하여 각 해당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분할연금을 수급하기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5년 4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박선화, 유문숙, 문은희, 이병주 님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영어상담을 해주신

오영미 변호사님

• 대학생 자원봉사

강민서, 강민지, 강영진, 강재연, 고아름, 권예지, 권윤아, 김다현, 김도윤, 김민경, 김민서, 김민지, 김서연, 김세림, 김세준, 김세중, 김세진, 김소영, 김수진, 김시현, 김연지, 김주하, 김주현, 김지민, 김지원, 나운우, 남성숙, 노현지, 류제빈, 문정현, 박지수, 배은솔, 배지연, 서예정, 서현진, 손재원, 송민성, 신이주, 신재원, 안세현, 양승완, 양은진, 윤상철, 윤석빈, 이다경, 이다현, 이도연, 이도현, 이미경, 이서연, 이아정, 이윤미, 이윤섭, 이정인, 이주홍, 이채린, 이홍익, 임성완, 장주원, 장진혁, 정가영, 정민주, 정준희, 최민제, 최예은, 최하늘, 한소원, 한수희, 허진, 황보선우, 남궁지윤, 황예원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최문원, 이현혜, 천정환, 김선숙 님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2025년 5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 ▶ 일시 : 매주 평일 상시
- ▶ 강사 : 본소 상담위원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5년 7월 10일,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의 제목
7월 10일	인간의 마음, 사랑과 분노
11월 13일	갈등의 해소와 함께 살아가는 법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5년 7월 17일 ~ 19일(2박 3일)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등시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의 제목	강사
5월 7일	나에게 잘 한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드는 마음, 미안함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6월 11일	모든 것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은 하나를 찾는 마음, 다행	
7월 9일	부리에 가해진 충격, 아동기 정신건강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8월 13일	과도한 자기중심성, 자기애성 성격장애	
9월 10일	균형의 상실, 경계선 성격장애	
10월 15일	누적된 스트레스의 범람, 공황장애	
11월 12일	시간의 멈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12월 10일	끝없는 도피, 중독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6년 1월 13일(화) ~ 15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교과과정

- 가족법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혼인 관련 법률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가족과 혼인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 과제

| 일시 |

2025년 5월 23일(금)
오후 2시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좌장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제 ① 별거제도 도입

- 혼인중 재산분할을 중심으로-

발표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토론 이선미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주제 ② 혼인의 기능에 따른 비혼 생활공동체의 보호

발표 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주제 ③ 호주제의 잔재, 자녀의 성과 본

발표 송효진 (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

토론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www.lawhome.or.kr